

(2) 현역장교, 하사관 또는 병(전투경찰대원·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)으로 복무하게 된 때(다만, 사관학교·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)

(3) 병역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

(4)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

다) 이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,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사유에 포함됨

※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「군인사법」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「병역법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간의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, 복직처리도 가능함

4) 휴직기간 및 횟수

가) 법정휴직기간: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

(1) 복무기간이라 함은 「병역법」 제18조 및 제30조와 「군인사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말함

(2)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시 「군인사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또는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을 경우, 본인의 의무복무기간(단기복무장교인 경우 3년)에 군장학금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(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 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)으로 봄

나) 휴직발령 기준일 및 입영 준비 기간의 처리

(1)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완함

(2) 입영 준비 기간의 처리: 연가 사용

다) 휴직의 횟수: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, 「병역법」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,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을 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

5) 휴직신청서류

가) 휴직신청서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 등을 명시

나) 휴직사유 입증서류

(1) 「병역법」 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(직권휴직이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)

(2)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됨

6) 복직절차

가) 귀가 처리된자의 처리: 「병역법」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함